

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번호 2002-94

제출년월일 : 2002. 12.
제 출 자 : 김제시장

정이유

읍·면·동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에 맞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..

주요골자

- 읍·면·동장이 매년 실시하던 교육·훈련을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함. (안 제6조)
- 근거법령을 개정 함(안제1조, 제7조).

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
- 읍,면,동 기능전환 지침
- 예산조치 사항 : 별도 조치 사항 없음
- 협의등 : 별도조치사항 필요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중 “풍수해대책법제22조제2항”을 “자연대책법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6조중 “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매년”을 “시장은 매년”으로 한다.
제7조중 “풍수해대책법제29조”를 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교육및훈련)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매년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사이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~8 (생략)</p> <p>제7조(동원절차) <u>풍수대책법 제29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에는 시장은“별지1호서식”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교육및훈련) 시장은 매년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~8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동원절차) <u>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